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3. 3. 8.(수)	
담당 부서 <총괄>	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(3.8.) 조치 의결-

주요 내용

-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8일 제5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매일방송 등 6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윤정숙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차도식 (02-3145-7731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이목희 (02-3145-7290)
		담당자	부국장	이형석 (02-3145-7306)
		담당자	팀 장	정현호 (02-3145-7311)
		담당자	팀 장	최창중 (02-3145-7301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5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3.3.8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매일방송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</p> <p>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유선방송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(’17년 45,927백만원, ’18년 43,539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인식을 누락하였고,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</p> <p>② 무형자산 과대계상 (’17년 7,083백만원, ’18년 6,58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증편사업 승인시 인식한 무형자산(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)의 내용연수를 과다하게 추정하여,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</p> <p>【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단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7년 13,401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임직원 단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7년 7,083백만원, ’18년 6,583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무형자산 내용연수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※ 금번 조치는 증선위가 ‘19.10.30일에 既 의결한 (주)매일방송에 대한 감리조치시 포함되지 않았던 ‘17~’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‘11~’16년 당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리대상연도를 확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것임 (주요 위반행위는 ‘19.10.30일에 의결한 지적사항과 동일)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(주)매일방송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8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매일경제신문사</p> <p>결산기 :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신문발행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미수금 허위계상 등 (’11년 10,810백만원, ’12년 13,688백만원, ’13년 16,443백만원, ’14년 18,262백만원, ’15년 18,722백만원, ’16년 18,533백만원, ’17년 8,731백만원, ’18년 8,61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임직원 명의 차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계상 하였고, 허위로 작성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</p> <p>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(’11년 4,669억원, ’12년 4,487억원, ’13년 4,391억원, ’14년 4,452억원, ’15년 4,632억원, ’16년 4,786억원, ’17년 5,160억원, ’18년 5,430억원)</p> <p>- 회사는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자산,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하였음</p> <p>③ 수입보증금 과소계상 (’11년~’18년 8,00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신문 판매지국 보증금 등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의무가 있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를 일부 누락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 함</p> <p>※ 본 건 위반행위는 既 의결된 (주)매일방송 조치 (증선위, ’19.10.30) 지적사항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삼화전자공업(주)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3.31. 2018.6.30. 2018.9.30.</p> <p>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(’17년 1,152백만원, ’18년 1분기 1,213백만원, ’18년 반기 907백만원, ’18년 3분기 868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품목별 품질 문제, 단종 여부 및 진부화 검토 등 재공품 관련 순실현가능가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 함</p> <p>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’17년 6,442백만원, ’18년 1분기 6,442백만원, ’18년 반기 6,442백만원, ’18년 3분기 6,44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기업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매출채권 회수 지연 사실에도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</p> <p>③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(’17년 4,254백만원, ’18년 1분기 4,254백만원, ’18년 반기 4,254백만원, ’18년 3분기 4,25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기업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분 자본잠식 등의 사실에도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함</p> <p>④ 무형자산 과대계상 (’16년 1,903백만원, ’17년 1,744백만원, ’18년 1분기 1,795백만원, ’18년 반기 1,778백만원, ’18년 3분기 1,68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기업 보유 중국 소재 토지 사용권에 대해 거래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가 모형을 적용해야 함에도, 재평가모형으로 잘못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함</p> <p>⑤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(’16년 1,903백만원, ’17년 4,245백만원, ’18년 1분기 5,425백만원, ’18년 반기 43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순자산이 과대계상 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253.1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	<p>⑥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(’16년 4,754백만원, ’17년 9,645백만원, ’18년 1분기 8,849백만원, ’18년 반기 10,074백만원, ’18년 3분기 10,198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지분율이 50% 미만이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지배력을 보유한 (주)OOOO을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여, 연결재무제표상 자산·부채 등을 과대·과소계상 함</p> <p>⑦ 토지 재평가 오류 (’17년 2,671백만원, ’18년 1분기 2,671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토지 재평가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주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토지를 과소계상 함</p> <p>⑧ 투자부동산 분류 오류 (’16년 1,510백만원, ’17년 1,495백만원, ’18년 1분기 1,492백만원, ’18년 반기 1,876백만원, ’18년 3분기 1,87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보유한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 (원가모형)으로 분류해야 하나, 일반유형자산(재평가 모형)으로 잘못 분류하여 재평가차익을 과대계상 함</p>	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삼화전자공업(주)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3,16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재공품 관련 순실현가능가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6,442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종속기업 매출채권 관련 손상징후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③ 유형자산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4,25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 관련 손상차손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④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1,903백만원, '17년 1,74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종속기업 보유 중국 소재 토지 사용권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⑤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1,903백만원, '17년 4,24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⑥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4,754백만원, '17년 9,64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종속기업에 대한 회사 지배력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⑦ 토지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2,671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회사 토지 재평가 주기 검토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⑧ 투자부동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1,510백만원, '17년 1,49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투자부동산 분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	<p>대명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% - 삼화전자공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화전자공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화전자공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신흥</p> <p>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('14년 5,428백만원, '15년 6,351백만원, '16년 7,292백만원, '17년 6,774백만원, '18년 6,457백만원, '19년 7,82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의 입·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물이 없거나,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을 재고 자산으로 계상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시정요구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신흥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4년 5,428백만원, ’15년 6,351백만원, ’16년 7,292백만원, ’17년 6,774백만원, ’18년 6,457백만원, ’19년 7,826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회사가 재고자산 일부만 실사를 수행하였음에도, 실사대상 재고목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삼일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징금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- (주)신흥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2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주)신흥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4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주)신흥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6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주)신흥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다이나믹디자인</p> <p>결산기 :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3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타이어금형 및 제조설비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자산 가공계상 및 비용 허위인식 등 ('13년 184백만원, '14년 3,771백만원, '15년 24,239백만원, '16년 20,414백만원, '17년 16,440백만원, '18년 1분기 16,92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거래처 등과 공모 후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,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허위 인식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</p> <p>② 종속회사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('16년 3,757백만원, '17년 61,390백만원, '18년 1분기 60,339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회사에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평가하여 손상을 과소 인식하는 등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함</p> <p>③ 비지배 보유 풋옵션 관련 회계처리 누락 ('15년 971백만원, '16년 1,01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미국소재 법인의 지분 취득시, 동사의 비지배주주와 풋옵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등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70.5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前담당임원 2인 해임권고 상당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골드퍼시픽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생활용품 도매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(’16년 7,429백만원, ’17년 7,475백만원, ’18년 3,070백만원, ’19년 61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</p> <p>② 증권신고서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’18.10.29.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’17년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 <p>③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’19.5.16.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’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 <p>④ 외부감사 방해</p> <p>- 회사는 사무실 위장 및 거래 조작을 통한 허위 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392.8백만원</p> <p>※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</p> <p>- 前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</p> <p>- 검찰고발 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 2인)</p> <p>- 검찰통보 (前임원 2인)</p> <p>- 과태료 48.0백만원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골드퍼시픽	<p>【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6년 7,429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